

## 11월3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건축구분	심의구분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건폐율	용적율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일시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206500000P003095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호동 1477	9,995	87.9	87.9	0.8794	0.8794	동,식물관련시설	1/0	자연녹지지역	20.11.19	재심의	변경 전 도서 제시 바랍니다. 심의 이력 표지 기재 바랍니다.
2	20206500000P003097	신축	재심의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2848	15,398	3,760.14	12,741.05	24.42	59.99	숙박시설	5/1	자연녹지지역	20.11.19	원안동의	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, 건축 허가(신고)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(신고)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.
3	20206500000P002964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94-4	524	196	196	37.4	37.4	제1종근린생활시설	1/1	계획관리지역	20.11.19	재심의	기존 건축물대장 면적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 건축물길이는 20M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(전체 건축물 길이) 물탱크실 및 피트층 등 지하층 계획은 지양 바랍니다. 원지방 기준 부지 내 최저점에서 건축물 높이는 5M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.
4	20206500000P002989	신축	신규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48	119	23.79	38.5	19.9916	32.3529	제1종근린생활시설	2/	보전녹지지역	20.11.19	부결	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현 부지는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